V. 示唆點 및 結論

- o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국경없는 금융자본의 이동이 그 어느때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, 각국은 자국민의 보호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경쟁력있는 우량 대형금융기관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예금자권익보호 차원에서 각국은 예금자보호장치,
 즉 예금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장
 내 적절한 시장규율의 확립과 함께 보증기금의 다각적인 재원
 확보 및 운용방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.
- o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장치의 연륜이 일천한 상황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시 부족한 재원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당부분 해 결하였음.
 -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적 인 특별보험료 갹출 도입, 책임경영구축을 위한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음.
- o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개방에 맞추어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외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·운용해왔던 바, 타금융권과의 비교할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하였음.
 - 현행 예금보험료 수준의 과다로 건실한 보험회사의 수익성악화 가 예상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 - 특히 타금융권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율 체제, 즉 보험료산출 기준 및 보험료율에 있어서 형평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.

o 본고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, 보험업종에 대한 제도 적용 및 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음.

<단기 개선방안>

- o 첫번째 보증기금의 출연방식, 즉 보험료의 사전갹출과 사후갹출 및 출연율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,
 - 보험료 갹출의 사전/사후방식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의 전환을 추진하되,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 적인 사후보험료 갹출로 규정함.
 - 보험료산출의 기준을 실질적인 계약자에 대한 부채(예수금 성격)으로서 책임준비금으로 하되, 기존의 보험료산출기준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보다 1/3~1/2 수준인 0.05%~0.07% 까지 하향조정이 요구됨.
- o 두번째 보험료갹출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신규도입과 관련하여,
 - 사전납부방식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율에 대한 狹義의 차등화 제도를 대신하여 보험보증제도의 광의의 기능 확보차원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되,
 -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은행 및 종금사에 비해서 차후적으로 적용함. 또한 보험권 전체에 일괄적용보다는 손해보험부터 先 적용(2000년)후에, 1~2년차 경과후에 생명보험에도 도입함.
 -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종합점수 배정방법은 지급여력비율 및 감 독당국의 경영평가지표 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여 활용함.
 -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70만점으로 하여 100% 초과, 50~100%, 0%~50%, 0% 미만 등 총4단계로 구분하여, 각각 70점, 50점,

40점, 30점의 배점을 각각 부여하고, 경영평가지표는 금융감독원의 5단계 경영실태평가를 총 30점 만점으로 함. 단, 두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합점수를 근거로 총4단계등급으로 하되, 보험료율의 차등화 폭은 기준 표준요율의 70%~120%로 함.

- 단, 차등화 폭의 범위는 도입초기에 각 단계별로 확대시행되는 세부일정을 명시화하여, 각 금융기관이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事前豫告效果를 통한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.
- o 세번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 추가갹출과 관련하여,
 - 외국사례 및 예금보험기금 재원형편상 추가적으로 일정수준의 특별보험료 갹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하지만,
 - 실질적인 보험료율의 결정은 금융권별 공적자금 규모와 해당 금융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, 총괄적인 공동 Rule에 의한 단순적용보다 기존의 사전갹출제에 의한 보험료 갹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함.
 - 그러나 보험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과다한 규모의 예금보험료 납부가 예상되므로, 향후 특별보험료 부과 도입시, 반드시 사전 보험료의 표준비율에 대한 절대적 인하가 선행되어야 함.116)

<중장기 개선방안>

- o 첫번째 향후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, 예상되는 것으로,
 - 현행 통합 운용체제보다는 별도의 계약자보호장치의 필요성에

¹¹⁶⁾ 예로서, 향후 공적자금 회수율 20%~30% 내외, 회수기간 10년~20년 정도를 가정할 때, 특별보험료율(표준비율)은 약 0.03%~0.075% 수준으로 추정됨. 이는 보험권 전체적으로 볼 때, 예금보험료납부 총액규모가 연간 약1,000~1,5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.

관한 것으로서,

-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운용 사례와 향후 종합금융화, 금융 기관간 인수합병, 持株會社형태의 異種 금융기관간의 기업계열 화 등 환경 변화시 계약자보호를 위해서는 은행 등 저축금융기 관의 예금보호제도와 보험산업의 보험계약자보호 장치가 二元化 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함께 현행 통합 보증기금의 구분계리 체제보다는 금융업종 별 별도의 분리계정(separate account)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강력하고 투명한 차단벽(FireWall)이 이루어져야 함.
- o 두번째, 동일 보험업종내에서도 보험계약 종류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차단벽(Firewall) 설치가 필요함. 그이유는 보험종류에 따라 실제 보험사업자의 지급불능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임.
 - 최소한 보험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종류별로 세분화하되,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, 손해보험의 경우 는 자동차보험, 책임보험, 일반 손해보험, 장기보험 등으로 세 분화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재원 확보 및 지급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- o 셋째, 선진국의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사례에서 얻은 교훈으로서,
 -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들에게도 일정수준의 책임분담 체제가 해당 법규상에 마련함으로써 계약자 스스로가 자기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 - 또한 보험료 갹출제와 관련하여 경상비용과 보전비용을 각각
 사전보험료와 사후보험료로 재원을 확보시, 사후보험료 갹출
 상한선 및 적립규모의 한도 등에 대해서도 관계 법규에 명시

함으로써, 잔존 보험회사의 유한책임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.

- 그리고 보험료갹출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 및 기타 공제방법을 마련하여 과도한 보험료납부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, 궁극적으로 건실한 우량 보험회사 육성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o 결론적으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, 예금자 권 익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함. 이러한 상 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효율성 확보는 향후 금융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o 그러나 단순히 재원확보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제도 운용상의 강화 및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시장내 세부적인 현실과 보이지 않는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,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오히려 우량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및 계약자권익이 침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임.
- o 끝으로 본연구의 한계점으로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타당성, 예금보험 적립규모의 적정규모 및 보험료의 사전/사후 갹출제의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다소 미흡함.
 -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세제처리 및 각 계정별 예금보험 기금의 적정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함.
 -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제도운용 형태 및 제도보완 방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임.